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6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윤종균 · 김우영 · 문진석
진선미 · 신정훈 · 전용기
김태선 · 이기현 · 남인순
김태년 · 허 영 · 이광희
소병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이나 공무원·군인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다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의”를 “교직원·공무원·별정우체국직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군인연금법」 제38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 --교직원·공무원·별정우체국 직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 ----- ----- ----- ----- ----- ----- ----- -----. ② ----- ----- ----- -----퇴직 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군인연금법」 제38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

<u>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u>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원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u>27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u>----- -----. -----. ③·④ (현행과 같음)
---	---